



2026. 4. 20.

2025회계연도 논산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논산시결산검사위원

2025회계연도 논산시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논산시장

제목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2025회계연도 논산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6년 4월 6일 ~ 4월 20일(15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 태 모(논산시 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박 찬 해(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황 범 진(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이 지 응(세무사)
- 검 사 위 원 : 황 인 용(세무사)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논산시결산검사위원

결 산 검 사 의 건 서

논산시장 귀하

2026년 4월 20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5회계연도 논산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2026년 4월 6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논산시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논산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논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불임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논 산 시 결 산 검 사 위 원

대표검사위원	이	태	모
검사위원	박	찬	해
검사위원	황	범	진
검사위원	이	지	웅
검사위원	황	인	용



목 차

I.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21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25
1. 논산시 재정의 현황	27
2. 세입·세출 결산	29
3. 기금 결산	39
4. 재무제표의 결산	41
5. 성과보고서	43
6.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45
III. 개선 및 권고사항	47
IV. 수범사례	143

I.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1.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자료 대조, 현지 확인, 금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2. 결산검사기간 : 2026. 4. 6. ~ 4. 20.(15일간)

3.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이 태 모	세입, 세출결산 총괄	논산시의회 의원
위 원	박 찬 해	세출전반, 예산이용·전용, 예비비	전직 공무원
위 원	황 범 진	성과보고서, 특별회계, 공유재산, 물품	전직 공무원
위 원	이 지 웅	재무제표 전반, 건의·수범사례	세 무 사
위 원	황 인 용	세입전반, 기금, 채권, 채무	세 무 사

4. 중점검사내용

가. 세입 분야

- 1)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
- 2) 과세관련자료 적정 여부
- 3) 체납액 정리 및 적법 결손처분의 여부
- 4) 효율적인 자금 관리여부 및 운용 실태

나. 세출 분야

- 1) 세출예산의 적법편성 및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
- 2) 이월 예산 및 예산 이용, 전용의 적정 여부
- 3) 불용액에 대한 타당성 검사

다. 기금 결산

- 1) 기금 관리 운영의 적정성 여부

라. 재무제표

- 1)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 및 검토절차의 적정성 확인 여부
- 2)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의 수정방안 및 개선 대안 제시 확인

마. 성과보고서

- 1) 성과관리 체계의 적합성, 성과지표 타당성, 측정방법 적합성, 목표치의 적정성 확인
- 2) 성과실적의 신뢰성, 실적치의 적합성, 실적치 측정 타당성 확인

바. 채권, 채무 관리

- 1) 채권·채무 관리의 적정 여부
- 2) 채무 변제의 이행 실태

사. 재산 및 기금, 물품 관리

- 1) 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대장 등재 여부
- 2) 정수 물품 관리 실태 및 현재액보고서와 일치 여부

아. 금고의 결산

- 1) 세입·세출회계별 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 여부
- 2) 수입계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의 상호 부합 여부

위 내용 외에 시정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별도 후술하였습니다.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논산시 재정의 현황

가.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세 입 (수 입)	1,275,337,066	1,429,395,497	1,340,327,710	1,402,022,357	1,514,379,847
	세 출 (지 출)	1,014,161,954	1,182,562,064	1,100,655,989	1,136,628,260	1,255,412,653
	결산상잉여금	261,175,112	246,833,433	239,671,721	265,394,097	258,967,194
일반회계	세 입	1,134,126,529	1,298,965,605	1,227,556,965	1,300,478,539	1,367,995,417
	세 출	917,245,970	1,080,856,818	1,015,924,620	1,061,609,997	1,145,782,005
	결산상잉여금	216,880,559	218,108,787	211,632,345	238,868,542	222,213,412
특별회계	세 입	141,210,537	130,429,892	112,770,745	101,543,818	146,384,431
	세 출	96,915,984	101,705,246	84,731,369	75,018,263	109,630,649
	결산상잉여금	44,294,553	28,724,646	28,039,376	26,525,555	36,753,782

최근 5년간 평균 세입은 4.4%, 세출은 5.5% 증가, 잉여금은 0.2%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액은 8.0%(112,357,490천원), 세출결산액은 10.5%(118,784,393천원) 증가, 결산상잉여금은 2.4%(6,426,903천원) 감소하였음.

세출결산액을 2025.12.31.기준 주민수 106,777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 지출규모”는 11,757천원임.

논산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차 입 금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논산시 최근 3년간 차입한 사실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0원임.

2.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1,507,376,498	1,514,379,847	1,255,412,653	258,967,194
일반회계	1,362,464,931	1,367,995,417	1,145,782,005	222,213,412
특별회계	144,911,567	146,384,431	109,630,649	36,753,782
공기업	99,469,171	100,623,800	67,987,430	32,636,371
기 타	45,442,396	45,760,630	41,643,219	4,117,411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명세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64,330,442	36,320,352	89,196,836	22,228,018	46,891,545
일반회계	59,079,681	30,561,685	74,367,128	21,080,715	37,124,202
특별회계	5,250,761	5,758,666	14,829,708	1,147,303	9,767,343
공기업	5,250,761	5,758,666	14,198,860	959,529	6,468,554
기 타	0	0	630,848	187,774	3,298,789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14,379,847천원으로 예산현액 1,507,376,498천원보다 7,003,349천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2.9%인 1,255,412,653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8,967,194천원임.

이중 명시이월비 64,330,442천원, 사고이월비 36,320,352천원 및 계속비 89,196,836천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2,228,018천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6,891,545천원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46,891,545천원임이 확인되었음.

나. 일반회계

1) 세입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결산액	1,362,464,931	1,388,133,910	1,367,995,417	2,655,525	17,482,969
결산확인액	1,362,464,931	1,388,133,910	1,367,995,417	2,655,525	17,482,969
차액	0	0	0	0	0

수납액 1,367,995,417천원은 예산현액의 100.4%로서 5,530,486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 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5%이며, 정리보류액은 2,655,525천원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367,995,417	1,367,995,417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율
2025	1,362,464,931	1,388,133,910	1,367,995,417	2,655,525	17,482,969	98.5%
2024	1,296,733,295	1,321,376,279	1,300,478,539	1,714,828	19,182,912	98.4%
증감	65,731,636	66,757,631	67,516,878	940,697	△1,699,943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재원별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계		1,362,464,931	1,388,133,910	1,367,995,417	2,655,525	17,482,969
자체 수입	소계	118,402,926	140,178,777	120,043,498	2,655,525	17,479,753
	지방세	82,211,000	89,518,329	83,714,826	1,051,314	4,752,189
	세외수입	36,191,926	50,660,448	36,328,672	1,604,211	12,727,564
이전 수입	소계	938,056,361	941,755,502	941,755,502	0	0
	지방교부세	435,012,781	435,012,781	435,012,781	0	0
	조정교부금등	34,529,925	40,116,771	40,116,771	0	0
	보조금	468,513,655	466,625,950	466,625,95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6,005,644	306,199,632	306,196,416	0	3,216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은 전년도 1,300,478,539천원보다 67,516,878천원이 많은 1,367,995,417천원이 수납되어 5.2% 증가.
- 정리보류액은 전년도 1,714,828천원보다 940,697천원 증가한 2,655,525천원이며 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1,596,106천원, 평가액부족 402,837천원, 소멸시효 완성 370,025천원 등임.
-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5.5%인 83,714,826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6,328,672천원, 지방교부세는 28.7%인 435,012,781천원, 조정교부금등은 40,116,771천원, 보조금은 466,625,950천원 수납되었음.

2) 세 출

일반회계 세출 결산 확인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결 산 액	1,169,746,683	1,362,464,931	1,145,782,005	165,846,494	29,794,468
결산확인액	1,169,746,683	1,362,464,931	1,145,782,005	165,846,494	29,794,468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169,746,683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92,718,248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362,464,931천원임.
-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총1건, 402,035천원을 예산 범위 안에서 단위사업 간 전용하여 사용함.
- 이체는 1,473,857천원으로서 업무이관과 조직개편 등에 기인함.
- 예비비 예산액은 4,065,031천원으로서 어르신회관 소요물품 지원사업 외 30건 3,747,96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527,492천원을 지출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1%에 해당하는 1,145,782,005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65,846,494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60,917,681천원, 사고이월액은 30,561,685천원, 계속비이월액은 74,367,128천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에 해당하는 29,794,468천원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145,782,005	1,145,782,005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과목	2024회계연도 집행액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계	1,061,609,997	1,362,464,931	1,145,782,005	84.1	84,172,008	7.9
일반공공행정	52,690,777	117,691,369	112,372,804	95.5	59,682,027	113.3
공공질서및안전	10,832,725	14,026,609	11,411,793	81.4	579,068	5.3
교육	11,869,627	16,133,909	11,743,782	72.8	△125,845	△1.1
문화및관광	62,968,375	95,404,642	65,339,590	68.5	2,371,215	3.8
환경보호	53,874,208	57,700,472	52,896,800	91.7	△977,408	△1.8
사회복지	307,716,254	334,511,818	324,275,347	96.9	16,559,093	5.4
보건	36,319,800	43,039,944	41,739,073	97	5,419,273	14.9
농림해양수산	190,573,881	218,033,276	174,278,178	79.9	△16,295,703	△8.6
산업·중소기업	34,115,339	34,426,868	31,369,038	91.1	△2,746,301	△8.1
교통및물류	49,257,437	53,054,163	40,715,923	76.7	△8,541,514	△17.3
국토및지역개발	131,094,649	247,995,697	153,817,710	62	22,723,061	17.3
예비비	0	317,070	0	0	0	0
기타	120,296,924	130,129,095	125,821,965	96.7	5,525,041	4.6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324,275,347천원, 농림해양수산 218,033,276천원, 국토및지역개발 153,817,710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113.3%), 국토 및 지역개발(17.3%), 보건(14.9%) 등 임.

다. 특별회계

1)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144,911,567	152,801,562	146,384,430	67,434	6,349,69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99,469,171	101,239,936	100,623,800	322	615,812
상 수 도	38,326,969	37,979,342	37,466,471	311	490,559
하 수 도	61,142,202	63,260,594	63,135,329	11	125,253
기 타 특 별 회 계	45,442,396	51,561,626	45,760,630	67,112	5,733,884
의 료 급 여	3,947,069	4,401,957	4,003,272	67,112	331,572
수 질 개 선	1,683,097	1,683,138	1,683,138	0	0
농 공 단 지	948,825	950,554	950,554	0	0
논산시일반산업 단지조성사업	275,527	271,997	271,997	0	0
주 택 사 업	126,522	133,894	130,911	0	2,983
주 차 장 관 리	2,928,083	3,547,125	3,070,547	0	476,578
토 지 관 리	2,491,172	7,525,838	2,603,087	0	4,922,750
도 시 재 생	739,569	742,536	742,536	0	0
국방국가산업단지 조 성 사 업	32,302,532	32,304,587	32,304,587	0	0
결 산 확 인 액	144,911,567	152,801,562	146,384,430	67,434	6,349,696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46,384,430천원은 예산현액의 101%로서 1,472,863천원이 초과수납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5.8%로서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하였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46,384,430	146,384,430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2)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28,416,508	144,911,567	109,630,649	25,839,136	9,441,78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83,470,882	99,469,171	67,987,430	25,208,288	6,273,453
상 수 도	27,205,935	38,326,969	24,646,786	12,245,244	1,434,939
하 수 도	56,264,947	61,142,202	43,340,644	12,963,044	4,838,514
기 타 특 별 회 계	44,945,626	45,442,396	41,643,219	630,848	3,168,330
의 료 급 여	3,947,069	3,947,069	3,747,308	0	199,761
수 질 개 선	1,683,097	1,683,097	1,648,859	0	34,238
농 공 단 지	501,054	948,825	317,978	630,847	0
논산시일반산업 단지조성사업	275,527	275,527	207,226	0	68,301
주 택 사 업	126,522	126,522	102,463	0	24,059
주 차 장 관 리	2,879,084	2,928,083	787,796	0	2,140,287
토 지 관 리	2,491,172	2,491,172	1,892,914	0	598,258
도 시 재 생	739,569	739,569	638,675	0	100,893
국방국가산업단지 조 성 사 업	32,302,532	32,302,532	32,300,000	0	2,532
결 산 확 인 액	128,416,508	144,911,567	109,630,649	25,839,136	9,441,783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28,416,508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6,495,05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4,911,567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이용, 전용은 없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에 해당하는 109,630,649천원이며, 이월액은 25,839,136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5%에 해당하는 9,441,783천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9,630,649	109,630,649	0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라.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단위 : 천원)

회 계 별	이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310	238,036,625	132	112,519,442	133	36,320,350	80	89,196,833
일반회계	280	165,846,493	124	60,917,681	121	30,561,685	62	74,367,127
특별회계	30	72,190,132	8	51,601,761	12	5,758,665	20	15,460,553
공기업	28	71,559,285	8	51,601,761	12	5,758,665	18	14,829,706
기 타	2	630,847	0	0	0	0	2	630,847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검사결과 결산액과 일치하였다.

3.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90,160,750	△10,012,940	49,439,968	59,452,909	80,147,809
자 활 기 금	863,498	44,287	86,867	42,580	907,784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57,059	8,936	502,136	493,200	465,995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00,009	△800,008	9,729	809,801	0
재 난 관 리 기 금	3,225,422	50,360	1,484,544	1,434,184	3,275,782
옥외광고정비기금	613,281	△94,143	88,120	182,264	519,137
식 품 진 흥 기 금	423,755	△31,471	34,380	65,851	392,284
농 촌 발 전 기 금	6,732,208	△4,273,770	1,445,430	5,719,201	2,458,437
고 향 사 랑 기 금	2,068,982	1,534,933	3,141,581	1,606,648	3,603,915
청 사 건 립 기 금	20,000,986	5,622,016	5,963,003	340,986	25,623,00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7,473,591	△15,840,029	11,859,970	27,700,000	11,633,56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7,501,959	3,765,949	24,824,141	21,058,191	31,267,908

2025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90,160,750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9,439,968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59,452,909천원을 공제한 80,147,809천원임.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 평균 증 가 율
전년도말 조성액	53,269	16,478	170,734	153,875	90,160	30.4
당해연도 조성액	53,894	164,597	37,895	23,423	49,439	△18.8
당해연도 사용액	84,756	10,341	54,754	87,138	59,452	0.7
당해연도말 조성액	22,407	170,734	153,875	90,160	80,147	41.6

논산시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30.4%p 증가하였고, 검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등 11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80,147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0,01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본년도 기금의 지출액은 59,452백만원임.

4. 재무제표의 결산

2025회계연도 논산시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4	202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143,066,170	4,148,689,619	5,623,449	0.14
I. 유 동 자 산	395,096,294	333,498,620	(-)61,597,674	(-)15.59
II. 투 자 자 산	18,151,670	7,444,121	(-)10,707,549	(-)58.99
III. 일 반 유 형 자 산	302,826,325	290,661,115	(-)12,165,210	(-)4.02
IV. 주 민 편 의 시 설	656,597,425	708,771,110	52,173,685	7.95
V. 사 회 기 반 시 설	2,766,440,804	2,804,680,045	38,239,241	1.38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3,953,652	3,634,605	(-)319,047	(-)8.07
부 채	32,323,096	37,260,335	4,937,239	15.27
I. 유 동 부 채	18,555,257	25,906,448	7,351,191	39.62
II. 장 기 차 입 부 채	0	0	0	39.62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3,767,839	11,353,886	(-)2,413,953	(-)17.53
순 자 산	4,110,743,074	4,111,429,284	686,210	0.02
I. 고 정 순 자 산	3,716,175,669	3,796,523,093	80,347,424	2.16
II. 특 정 순 자 산	65,255,483	51,496,192	(-)13,759,291	(-)21.08
III. 일 반 순 자 산	329,311,922	263,409,997	(-)65,901,925	(-)20.01

2025회계연도 말 논산시의 자산은 4,148,689,619천원으로 전년도의 4,143,066,170천원보다 5,623,449천원(0.14%) 증가하였고, 부채는 37,260,335천원으로 전년도의 32,323,096천원보다 4,937,239천원(15.27%)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를 차감한 논산시의 순자산은 4,111,429,284천원이며 전년도에 4,110,743,074천원보다 686,210천원이 증가하였음.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4	2025	전년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인건비	146,699,892	154,958,513	8,258,621	5.63
II. 운영비	302,097,594	340,532,228	38,434,634	12.72
III. 정부간이전비용	12,858,134	12,930,530	72,396	0.57
IV. 민간등이전비용	456,300,405	490,728,628	34,428,223	7.55
V. 기타비용	76,436,518	82,641,662	6,205,144	8.12
VI. 비용총계(B)	994,392,543	1,081,791,562	87,399,019	8.79
VII. 자체조달수익	131,014,289	136,369,569	5,355,280	4.09
VIII. 정부간이전수익	899,803,439	937,528,138	37,724,699	4.19
IX. 기타수익	20,776,532	9,121,805	(-)11,645,727	(-)56.10
X. 수익총계(A)	1,051,594,260	1,083,019,512	31,425,252	2.99
XI. 재정운영결과 (B-A)	(-)57,201,717	(-)1,227,950	55,973,767	(-)97.85

2025회계연도의 논산시의 총비용은 1,081,791,562천원이며 총수익은 1,083,019,512천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 (-)1,227,950천원이 발생하였고,

2025년에 논산시의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31,425,252천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87,399,019천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 전년도보다 55,973,767천원이 증가하였음.

5. 성과보고서

논산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5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합 계	12	99	213	204	9	95.7
의회사무국	1	1	2	2	0	100
기획감사실	1	2	6	6	0	100
예산실	1	2	6	4	2	66.6
미래전략실	1	5	10	10	0	100
홍보협력실	1	1	4	4	0	100
행정안전국	1	10	25	25	0	100
농산경제국	1	16	31	26	5	83.8
건설미래국	1	24	38	38	0	100
문화환경국	1	15	32	32	0	100
인구복지국	1	14	31	29	2	93.5
직속기관	1	7	26	26	0	100
사업소	1	2	2	2	0	100

논산시에서는 본 회계연도의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2개)-정책사업목표(99개)-단위사업(21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논산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213개의 지표수 중 204개의 성과지표를 초과달성 및 달성하여 95.7%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9개의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였음.

6.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가.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 환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현 재 액
합 계	6,873,676	491,662	701,752	6,663,586
일반회계	5,306,419	353,662	601,752	5,058,329
특별회계	3,257	0	0	3,257
기 금	1,564,000	138,000	100,000	1,602,000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63,586천원으로 확인되었다.

나. 채 무

채 무 현 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 환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현 재 액
합 계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기 금	0	0	0	0

검사결과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되었다.

다.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단위 : 천원)

용도	구분	2024년도말 현재액	당해 연도 증감		2025년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2,285,530,137	130,326,056	87,396,210	2,328,459,983
행정 재산	소계	2,142,026,441	105,124,573	84,713,723	2,162,437,291
	공용재산	438,258,518	83,515,243	36,808,794	484,964,967
	공공용재산	1,696,497,196	21,607,717	47,698,142	1,670,406,772
	기업용재산	800,111	0	205,174	594,936
	보존용재산	6,470,615	1,612	1,612	6,470,615
	일반재산	27,481,690	1,790,020	2,682,487	26,589,224
	건설중인재산	116,022,006	23,411,461	0	139,433,468

라. 물품

본 년도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 연도 증감		2025년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수량	1,859	231	59	2,031
금액	16,051,016	1,188,847	628,275	16,611,588

Ⅲ. 개선 및 권고사항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1	세입금 정리보류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정리보류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에 집중하여 징수 효율성 제고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길 바람.	세 무 과 축 수 산 과 도 로 과 교 통 과 신 속 허 가 과 주민생활지원과 ※ 5천만원 이상
2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과다 초과세입 발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초과세입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세입예산의 잘못된 예측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 당해연도 집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길 바람.	세 무 과 디 지 털 정 보 과 농 산 물 유 통 지 원 센 터 산 림 공 원 과 지 역 경 제 과 도 시 주 택 과 교 통 과 토 지 정 보 과 상 하 수 도 과 문 화 예 술 과 체 육 진 흥 과 자 원 순 환 과 주민생활지원과 ※ 차액 5천만원 이상
3	자체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방안 강구	해당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통한 미수납액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음.	교 통 과 토 지 정 보 과 상 하 수 도 과 ※ 미수납액 상위부서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4	국·도비 보조금 집행 효율성 제고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예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추경예산 편성에 삭감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랍.	안 전 총 괄 과 축 수 산 과 환 경 과 자 원 순 환 과 아동복지돌봄과 ※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5	본예산 편성 시 법정·필수경비 우선 편성	법정경비 또는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과소계상 후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연간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본예산에 우선 계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	예 산 실
6	전출금 예산 미집행	예산이 성립된 후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이 통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기에 집행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	상 하 수 도 과
7	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미이행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때도 예산의 변경 절차를 거쳐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액과 수령액이 일치되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통보받은 보조금 교부 결정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선하기 바랍.	건 설 과 교 통 과 토 지 정 보 과 환 경 과
8	명시이월예산 집행 부진	예산 성립 후에 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명시이월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계상하고, 수년간에 걸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	축 수 산 과 건 설 과 체 육 진 흥 과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9	기금의 수입계획 변경 및 수정 철저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 되면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기금결산에 임하기 바람.	자 치 행 정 과 안 전 총 괄 과 농 촌 활 력 과 도 시 주 택 과 자 원 순 환 과 주민생활지원과 보 건 소
10	성인지예산 집행 적극 추진	성인지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 집행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관 광 과 평 생 학 습 도 서 관 ※ 집행률 60% 이하
11	성과보고서 목표 및 지표 적정 설정	성과목표 설정 시 설정 목표와 지표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다시한번 검토하고, 그 사업에 합당한 지표를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선정 바람.	전 부 서 ※ 제출부서: 예산실
12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적극 추진	주정차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징수 대책을 수립 및 정비보류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해소에 노력을 가하여 주기 바람.	교 통 과
13	특별회계에 맞는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 운영	특별회계 사업과 일치하지 않은 성과지표를 추진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로 수정하여 정책 목표 아래 특별회계의 사업 내용이 성과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투 자 유 치 과 교 통 과

1. 세입금 정리보류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현황

【연간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2025년	전년대비(%)
합계	1,380,004	1,793,013	413,009 (29.93%)	2,722,636	929,623 (51.85%)
일반회계	1,304,523	1,714,828	410,305 (31.45%)	2,655,524	940,696 (54.85%)
기타특별회계	75,481	78,185	2,704 (3.58%)	67,112	△11,073 (△14.16%)

【정리보류액 세부현황】

(단위 : 천원)

세목	연도	정리 보류액	배분금액 부족	채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합계	2025	2,722,636 (100.0%)	54,791 (2.0%)	71,474 (2.6%)	370,025 (13.6%)	227,403 (8.4%)	1,596,106 (58.6%)	402,837 (14.8%)
	2024	1,793,013 (100.0%)	102,589 (5.7%)	1,191 (0.1%)	224,049 (12.5%)	116,911 (6.5%)	809,505 (45.1%)	538,768 (30.1%)
일반 회계	2025	2,655,524 (100.0%)	54,791 (2.1%)	4,362 (0.2%)	370,025 (13.9%)	227,403 (8.6%)	1,596,106 (60.1%)	402,837 (15.2%)
	2024	1,714,828 (100.0%)	102,589 (6.0%)	1,191 (0.1%)	145,864 (8.5%)	116,911 (6.8%)	809,505 (47.2%)	538,768 (31.4%)
기타 특별 회계	2025	67,112 (100.0%)	0 (0%)	67,112 (100.0%)	0 (0%)	0 (0%)	0 (0%)	0 (0%)
	2024	78,185 (100.0%)	0 (0%)	0 (0%)	78,185 (100.0%)	0 (0%)	0 (0%)	0 (0%)

문제점

- 2025회계연도 총 2,722,636천원의 정리보류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각각 2,655,524천원, 67,112천원의 정리보류액이 발생하였음

- 또한 최근 3년간 정리보류액 추이를 비추어 볼 때 일반회계는 2,655,524천원으로 전년대비 54.85%로 최근 3년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67,112천원으로 전년대비 △14.16%으로 꾸준히 감소함
- 그 중 무재산에 따른 정리보류액이 1,596,106천원(58.6%)으로 전년 대비 97.17%가 증가했으며,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정리보류액 역시 370,025천원(13.6%)으로 전년대비 65.15%가 증가해 전체 정리보류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무재산에 따른 정리보류를 막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보유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파악 및 제3자를 통한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정리보류액의 징수율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또한 소멸시효제도 완성의 악용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완성 전 체납자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과 함께 관허사업의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및 채권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리보류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징수 효율성 제고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2.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과다 초과세입 발생

□ 현 황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부 서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차 액 (C-A)	비 고
합 계	1,050,410,669	1,074,429,637	1,059,960,566	9,549,897	
예산실	496,982,706	497,005,812	497,005,812	23,106	
자치행정과	33,216,852	33,256,466	33,252,247	35,395	
안전총괄과	4,221,180	4,253,738	4,235,078	13,898	
세무과	348,840,137	362,708,413	356,904,910	8,064,773	
디지털정보과	84,746	138,355	138,355	53,609	
민원과	293,641	356,176	321,869	28,228	
농산물유통지원센터	4,600,629	4,666,496	4,664,539	63,910	
산림공원과	12,448,284	12,629,297	12,626,049	177,765	
지역경제과	9,730,635	10,431,526	9,882,246	151,611	
국방산업과	2,236	26,896	26,896	24,660	
도시주택과	11,689,239	12,157,248	11,883,871	194,632	
교통과	5,360,413	10,544,058	5,382,921	22,508	
토지정보과	970,149	2,280,542	1,016,442	46,293	
문화예술과	8,393,023	8,464,771	8,454,615	61,592	
체육진흥과	7,943,026	8,162,478	8,158,571	215,545	
관광과	3,459,919	3,492,995	3,492,995	33,076	
환경과	7,915,089	7,964,867	7,937,658	22,569	
자원순환과	4,876,818	6,293,431	5,051,049	174,231	

부 서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차 액 (C-A)	비 고
인구청년교육과	2,724,759	2,746,650	2,746,650	21,891	
복지정책과	37,766,981	37,838,356	37,789,260	22,279	
주민생활지원과	43,938,866	43,954,433	43,951,522	12,656	
농업기술센터	4,941,340	4,973,115	4,966,719	25,379	
연무읍	500	44,739	34,403	33,903	
광석면	9,501	38,779	35,889	26,388	

※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서에 한함

【특별회계 기준】

(단위 : 천원)

회 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차 액 (C-A)	비 고
합 계	70,508,526	78,735,512	72,812,233	2,303,707	
의료급여	3,947,069	4,401,956	4,003,271	56,202	
주차장관리	2,928,083	3,547,125	3,070,546	142,463	
토지관리	2,491,172	7,525,837	2,603,087	111,915	
하수도사업	61,142,202	63,260,594	63,135,329	1,993,127	

※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서에 한함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수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수납액과 예산현액이 크게 차이나는 과목의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은 기본적으로 당해 편성하여 당해 지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앞으로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경예산 등을 통해 초과세입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세입예산의 잘못된 예측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체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방안 강구

현황(일반회계)

【자체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A-B-C)	사 유 (납세태만)
합 계	140,178	120,043	2,655	17,479	9,644
지방세수입	89,518	83,714	1,051	4,752	2,038
세외수입	50,660	36,328	1,604	12,727	7,605

문제점

- 세입결산 재원 내 자체수입 미수납액은 2025년도 말 기준 17,479백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12,727백만원으로 72.81%를 차지함.
세외수입 수납액 36,328백만원은 전체 수납액 120,043백만원의 30.26%에 불과하나,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 17,479백만원의 72.81%인 12,727백만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4,752백만원의 2.7배에 달함
- 세외수입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은 7,605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의 59.76%를 차지함.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은 2,038백만원으로 42.90%를 차지함
- 지방세는 정리보류 등 미수납액에 대하여 일정 수준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담당자가 미수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미수납액 상위 3개부서(교통과, 상하수도과, 토지정보과)의 합계액이 8,825백만원으로 전체의 65.41%를 차지하는데, 이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납부자의 성실납세 인식 부족과 관련 부서의 체납

처분 등 적극적인 부과·징수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짐

【세외수입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주요 세목	비 율 (%)
	당해연도	지난년도		
합 계	12,727	14,226		
교통과	4,731	4,744	과징금, 과태료 등	35.15
상하수도과	2,830	2,830		21.00
토지정보과	1,264	1,234	과징금, 과태료 등	9.27
자원순환과	1,236	1,206	과태료 등	9.06
신속허가과	929	951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6.97
지역경제과	549	575	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등	4.17
축수산과	3	992	그 외 수입	3.69
도시주택과	273	305	변상금, 과태료 등	2.14
농촌활력과	274	261	부정이익환수금 등	1.99
회계과	16	514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1.97
도로과	180	235	도로사용료 등	1.54
그 외 부서	442	379		3.04

개선 및 권고사항

- 당해연도분에 대한 미수납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지난년도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해당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보류를 통하여 미수납액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국·도비 보조금 집행 효율성 제고

□ 현 황(일반회계)

【전액 미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현액				집행잔액			
			계	국	도	시	계	국	도	시
합계	18건		514,420	183,850	112,434	218,136	514,420	183,850	112,434	218,136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강사료	사무관리비	5,720	0	1,716	4,004	5,720	0	1,716	4,004
	급경사지안전 점검용역	시설비	13,000	0	3,900	9,100	13,000	0	3,900	9,100
농촌활력과	공익직불제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4,000	4,000	0	0	4,000	4,000	0	0
	청년농업인영농 정착지원	행사운영비	3,000	1,500	0	1,500	3,000	1,500	0	1,500
축수산과	조사료 생산지원	기타보상금	100,350	55,750	13,380	31,220	100,350	55,750	13,380	31,220
토지정보과	폐천부지 감정평가	사무 관리비	2,000	0	2,000	0	2,000	0	2,000	0
환경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50,000	115,000	50,000	85,000	250,000	115,000	50,000	85,000
자원순환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시설비	20,000	6,000	4,200	9,800	20,000	6,000	4,200	9,800
인구청년 교육과	학교밖 세상소통카드	사회복지 사업보조	10,800	0	4,968	5,832	10,800	0	4,968	5,832
복지정책과	장애인생활안정 의료지원	의료 및 피복비	4,000	0	1,200	2,800	4,000	0	1,200	2,800
	장애인가족센터 운영 지원	민간 위탁금	55,000	0	11,000	44,000	55,000	0	11,000	44,0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직무수당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보조	1,350	0	270	1,080	1,350	0	270	1,08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돌봄	사회복지 사업보조	5,000	0	1,500	3,500	5,000	0	1,500	3,500
아동복지 돌봄과	어린이집폐원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지)	32,000	0	16,000	16,000	32,000	0	16,000	16,000
보건소	냉동난자사용보조 생식술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국)	1,200	600	300	300	1,200	600	300	300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국)	2,000	1,000	500	500	2,000	1,000	500	500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현액				집행잔액			
			계	국	도	시	계	국비	도비	시비
농업 기술센터	벼 직파 확대현장지원	국내여비	1,000	0	300	700	1,000	0	300	700
	농업기계운영지원	공공운영비	4,000	0	1,200	2,800	4,000	0	1,200	2,800

【집행잔액 과다 발생현황(70%이상 미집행)】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현액				집행잔액			
			계	국	도	시	계	국	도	시
합계		16건	4,077,452	3,464,863	376,540	236,049	3,781,674	3,284,267	305,768	191,639
안전총괄과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7,800	0	37,800	0	37,302	0	37,302	0
	풍수해 보험사업	보험금	73,143	0	56,000	17,143	52,297	0	41,410	10,887
농촌활력과	정부양곡관리비	사무관리비	5,100	5,100	0	0	4,596	4,596	0	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무관리비	22,454	11,227	0	11,227	18,594	9,297	0	9,297
축수산과	축산농가폐의약품 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16,000	0	4,800	11,200	13,221	0	3,966	9,255
투자유치과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	기타보상금	124,000	0	124,000	0	100,000	0	100,000	0
도시주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기타보상금	16,000	8,000	0	8,000	12,416	6,208	0	6,208
도로과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	시설비	732,897	732,897	0	0	731,915	731,915	0	0
체육진흥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2,700,000	2,700,000	0	0	2,525,062	2,525,062	0	0
자원순환과	탄소제로 실천가게 지원	기타보상금	60,000	0	18,000	42,000	59,985	0	17,995	41,990
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00	0	5,400	12,600	14,468	0	4,340	10,128
100세행복과	희망소리찾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지)	7,500	0	2,250	5,250	7,000	0	2,100	4,900
아동복지 돌봄과	힘센충남아동 돌봄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60,000	0	30,000	30,000	46,800	0	23,400	23,400
	어린이집운영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165,470	0	82,735	82,735	128,130	0	64,065	64,065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현액				집행잔액			
			계	국	도	시	계	국	도	시
아동복지 돌봄과	가족돌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지)	30,600	0	15,300	15,300	21,900	0	10,950	10,950
주민생활 지원과	자활성공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국)	8,488	7,639	255	594	7,988	7,189	240	559

문제점

- 논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수로 인해 더디게 집행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지연요인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여 해소하고 적기에 집행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위 현황과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중 18건, 514,420천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미집행하였고, 70%이상 미집행사업이 16건, 집행잔액이 3,781,674천원에 달함
- 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었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 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했으나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다음연도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5. 본예산 편성 시 법정·필수경비 우선 편성

현 황(일반회계)

【인건비 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과목	본예산 (A)	최종예산 (B)	증 감 (C=B-A)	비 고
2023	계	72,582,531	69,869,622	△2,712,909	
	101-1 보수	67,143,370	64,838,470	△2,304,900	
	101-02 기타직보수	5,439,161	5,031,152	△408,809	
2024	계	75,696,085	78,690,161	2,994,076	
	101-1 보수	70,162,607	72,775,769	2,613,162	
	101-02 기타직보수	5,533,478	5,914,392	380,914	
2025	계	81,980,138	84,473,855	2,493,717	
	101-1 보수	75,835,016	77,851,598	2,016,582	
	101-02 기타직보수	6,145,122	6,622,257	477,135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연도	본예산 (A)	최종예산 (B)	증 감 (C=B-A)	비 고
합 계	2023	15,855,425	18,640,175	1,899,750	
	2024	14,831,347	16,414,927	1,583,580	
	2025	16,825,989	17,845,829	1,019,840	
실	2023	1,970,445	1,019,145	△951,300	
	2024	434,880	552,300	117,420	
	2025	596,300	651,330	55,030	
행정안전국	2023	5,712,136	6,000,601	288,465	
	2024	4,715,760	4,825,160	109,400	
	2025	4,830,460	4,809,385	△21,075	

구 분	회계연도	본예산 (A)	최종예산 (B)	증 감 (C=B-A)	비 고
농산경제국	2023	985,934	1,386,688	400,754	
	2024	1,356,965	1,431,852	74,887	
	2025	1,461,592	1,544,812	83,220	
건설미래국	2023	1,813,553	3,138,723	1,325,170	
	2024	1,997,160	3,208,478	1,211,318	
	2025	2,922,211	3,872,511	950,300	
문화환경국	2023	1,924,250	2,554,582	630,332	
	2024	2,677,755	2,749,442	71,687	
	2025	2,939,885	2,941,685	1,800	
인구복지국	2023	604,402	604,699	297	
	2024	696,129	585,021	△111,108	
	2025	659,895	641,631	△18,264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2023	1,786,999	1,978,516	191,517	
	2024	1,886,591	1,948,879	62,288	
	2025	2,100,570	2,022,711	△77,859	
읍면동	2023	1,057,706	1,072,221	14,515	
	2024	1,066,107	1,113,795	47,688	
	2025	1,315,076	1,361,764	46,688	

□ 문제점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 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위 현황과 같이 법정경비인 일반 공무원 보수와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의 경우 2023회계연도에는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경예산에 2,712,90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2024회계연도에는 추경예산에 2,994,07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5회계연도에는 추경예

산에 2,493,71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필수경비인 공공운영비의 경우 2023회계연도에는 본예산 대비 1,899,750천원, 2024회계연도에는 본예산 대비 1,583,580천원, 2025회계연도에는 본예산 대비 1,019,840천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여 매년 증액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더 정확한 추계가 요구됨
-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한 세입예산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여건의 변화로 추계한 만큼의 세입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 편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법정경비 또는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과소 계상 후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연간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본예산에 우선 계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6. 전출금 예산 미집행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전출 대상 특별회계	본예산 (A)	최종예산 (B)	증감 (C=B-A)	집행액 (D)	미집행액 (E=B-D)
계	30,156,667	30,723,305	566,638	30,164,505	558,8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44,987	1,964,987	20,000	1,964,987	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536,638	10,095,438	558,800	9,536,638	558,800
의료급여특별회계	3,085,472	3,073,310	△12,162	3,073,310	0
농공단지특별회계	500,000	500,000	0	500,000	0
논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89,570	89,570	0	89,570	0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5,000,000	15,000,000	0	15,000,000	0

문제점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예산배정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변경요구를 받아 변경수립 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2조(자금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

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하수도과에서는 위와 같이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8,800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5. 12. 19.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예산이 성립한 후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예산이 성립된 후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이 통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기에 집행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 일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7. 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미이행

현 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액	수령액	차액	차액 발생 사유
건설과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계	70,000	35,000	35,000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사업중단 통보로 국비보조금 미교부 변경 결정되었으나 예산에 미반영
		국비	35,000	0	35,000	
		도비	0	0	0	
		시비	0	0	0	
교통과	택시자율 감차보상	계	78,000	54,600	23,400	국비보조금 미교부 변경 결정되었으나 예산 미반영
		국비	23,400	0	23,400	
		도비	0	0	0	
		시비	54,600	54,600	0	
환경과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계	16,500	5,775	10,725	아프리카 돼지 열병 미발생으로 국·도비 보조금 미교부 결정되었으나 예산 미반영
		국비	8,250	0	8,250	
		도비	2,475	0	2,475	
		시비	5,775	5,775	0	
토지 정보과	공유재산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계	0	2,857	2,857	건설과에서 이체된 예산으로 충청남도로 업무가 이관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감액 계상 (도비 보조금 미반납)
		국비	0	0	0	
		도비	0	2,000	2,000	
		시비	0	857	857	

문제점

-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때도 예산의 변경절차를 거쳐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액과 수령액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 위 현황과 같이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등 3건은 국·도비 보조금이 미교부 변경 결정되어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계상하여야

했으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충청남도로 업무가 이관된 공유재산(폐천부지) 평가 수수료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함

- 이는 변경 교부 결정된 보조금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정리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변경 교부 결정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빠짐없이 반영하여 보조금 결산상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통보받은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8. 명시이월예산 집행 부진

현 황(일반회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건수	2025 명시이월액(A)	집행액(B)	2026 사고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비 고
126	87,418,540 (100%)	58,164,444 (66.5%)	21,196,082 (24.3%)	8,058,014 (9.2%)	

【전액 미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5 명시이월액(A)	집행액(B)	2026 사고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5건	2,147,919	0	0	2,147,919
축수산과	축산물가공시설지원	170,000	0	0	170,000
건 설 과	소규모 공공시설 시스템 지원	180,000	0	0	180,000
	부적면 외성2리 소방도로 개설	400,000	0	0	400,000
	국가하천 유지보수	197,919	0	0	197,919
체육진흥과	부창동 만다비 체육센터 건립	1,200,000	0	0	1,200,000

문제점

-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같은법 제50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이월 제도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논산시에서는 2024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한 예산은 126건에 87,418,540천원이며, 이중 58,164,444천원을 집행하고 21,196,082천원을 2026회계연도로 사고이월(24.3%)하여 8,058,014천원의 집행잔액(9.2%) 발생으로 실집행률은 66.5%로 부진함
- 특히, 축산물가공시설 지원 등 5건 2,147,919천원의 사업비를 전액 미집행하였음
 - 위 사업의 명시이월(미집행) 사유를 보면 설계보완으로 착공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대상지 변경,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업계획수립 단계와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필요한 행정절차와 여건 변화를 예상할 수 있던 상황으로 보여 명시이월한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한 것은 부적정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추진 가능성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여러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 예산 성립 후에 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명시이월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계상하고, 수년간에 걸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9. 기금의 수입계획 변경 및 수정 철저

현 황

- 논산시에서는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단위 : 원)

기금명	과목	수입계획	징수결정액	비고
계		143,206,000	1,471,749,075	
자활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00	25,157,6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0	2,136,240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67,306,000	77,044,710	
옥외광고정비기금	기타수수료	62,000,000	72,157,195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00	14,363,020	
식품진흥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00	17,676,260	
농촌발전기금	그외수입	0	191,000,000	
	기금전입금	0	1,055,000,000	
고향사랑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7,500,000	17,214,040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수입계획 수립 시 이자수입, 기타수수료, 전입금 등 수입계획의 수정요인이 발생할 때는 추경 등 수입계획안을 수정하여야함
- 공공예금이자수입, 기금전입금 등 예측가능한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수입계획변경을 하고 기금수입결산에 임하기 바랍니다.

10. 성인지예산 집행 적극 추진

현황

【사업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고
계	85	81,260	73,122	89.98	
양성평등정책사업	41	8,911	8,421	94.50	
성별영향평가사업	17	29,308	28,719	97.99	
자치단체특화사업	24	39,483	34,562	87.54	
기타사업	3	3,557	1,418	39.87	

【성인지예산 집행 부진현황(집행률 60% 이하)】

(단위 : 백만원, %)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고
계	5				
관광과	2	3,547	1,408	39.71	
평생학습도서관	3	9,651	5,395	55.95	

문제점

- 성인지예산결산에서 85건, 81,260백만원의 예산현액에 대하여 73,122백만원을 지출, 집행률 89.98%에 달하여 전체적으로 목표에 맞게 양호한 실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성실히 성인지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판단됨
- 다만, 미진한 예산집행 현황과 같이 관광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집행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평생학습도서관에서도 예산집행이 타 부서에 비해 비교적 낮은 상황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친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양성평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을 인지하고,
- 성인지예산 집행 또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당 사업을 사업계획에 맞도록 성인지예산 집행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11. 성과보고서 목표 및 지표 적정 설정

현황

- 논산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2025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논산시는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담은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목표 99개와 213개의 지표를 정하여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연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25	12	99	213	27	177	9
2024	11	97	206	28	168	10

문제점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총 12개 실국 중 기획감사실 등 6개 실국은 100% 달성한 반면, 130% 이상 초과달성 또는 100% 이하 미달성한 실국은 6개 실국으로,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충실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 인력 등 투입량(투입지표), 사업집행 산출물량(과정지표), 사업완료 후 산출물(산출지표), 산출결과물 결과·효과(결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표 선정을 정책목표에 맞도록 성과지표를 선택하여야 하나,

- 그럼에도 만족도조사(질적성과 및 정량적지표), 공정률(사업진행사항) 등의 사례에서 목표설정 및 측정방식을 달성이 용이하게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이 확인되며
-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됨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계획과 성과보고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 시 결과 산출하는 것으로, 이에 무엇보다도 예산집행에 맞는 적절한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함
- 따라서, 성과목표 설정 시 설정 목표와 지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다시한번 검토하고, 그 사업에 합당한 지표를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선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12.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적극 추진

현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단위 : 원, %)

연도	부과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8,378	332,899,860	7,235	276,472,490	83.0
2024	8,100	299,822,340	7,262	249,592,680	83.2
2023	6,830	246,418,400	6,205	204,198,760	82.9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추이】

(단위 : 원)

연도	체납액(미수납액)	전년도 이월체납액	정리보류액
2025	476,578,499	462,835,989	0
2024	450,211,089	447,759,329	13,553,830
2023	467,943,740	509,467,280	60,317,389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추진현황】

(2025.12.31.기준)

종류	개소	주차면수	비고
계	192	6,209	
공영 주차장	139	4,794	
임시 주차장	53	1,415	
공한지 주차장	0	0	

문제점

-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단속문자알림서비스 제

공, 어린이보호구역 불편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을 증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위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위반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여 평균 83%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5년에는 476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 또한 0원으로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등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음에도, 주정차위반 건수는 소폭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누적되고 있는 체납 과태료가 467백만원으로 특별징수계획 및 정리보류계획 또한 함께 병행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번호판영치, 정리보류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13. 특별회계에 맞는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 운영

□ 현 황

-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
- 성과목표의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별회계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회계구분	주요 사업내용	2025년 성과지표	사업 대비 지표 일치 여부
의료급여	- 의료급여 - 건강생활 유지 - 장애인보조기 - 재가급여	- 사례관리 대상자 만족도 - 사회보장급여 자격 적정성 강화 - 의료급여 및 자활 서비스 제공 - 자원봉사 활성화 - 긴급복지 지원사업 활성화	일부 일치
수질개선	- 오염총괄 관리운영	- 강경천 수질오염 개선	일치
농공단지	- 강경2특화 농공단지 조성	- 신규산업단지 조성	일부 일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동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 신규산업단지 조성	일부 일치
주택사업	- 개나리아파트 관리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빈집정비 사업 - 공동주택 관리지원 - 옥외광고물 등 보수사업	불일치
주차장관리	- 주정차 단속 - 주차장 관리	-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률	불일치
토지관리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 사업의 만족도	일치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치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 충남도, LH, 국토연구원 관련기관 업무 협의 횟수 -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처리 건수 - 민군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일치

문제점

- 성과목표는 정책사업 목표를 대상으로 이에 따른 여러가지 단위사업에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운영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임
- 그러나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와 관련된 지표를 선정하지 않고 관리부서의 성과지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특별회계 고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사업과 일치하지 않은 지표는 추진사업과 관련된 지표를 발굴, 교체하여 정책목표 아래 특별회계 사업내용이 성과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